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70호)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2
※ 참고자료	10
1. 사인의 금지청구권 관련 유사 입법례	10
2. 금지청구권 관련 주요 판례	11
3.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처리절차(중소벤처기업부)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4. 6. 21.
3. 회부연월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는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안 제28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조문을 신설하여 수탁기업의 보유기술 보호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¹⁾는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의미하고, ‘유용행위’²⁾는 위탁기업이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이에 따르면,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³⁾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내려진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음. 조치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제25조(준수사항)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조치 등의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그 손해가 커질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효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른바 위법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려는 것임.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통상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쟁당국의 조사 절차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이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⁴⁾.

국내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⁵⁾에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식재산분야에 도입되었으며,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

4)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실효적 집행, 경쟁법연구 제10권(한국경쟁법학회, 2004.3.) p21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래에 관한 법률」에도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금지청구권⁶⁾이 도입
(2020.12.29. 개정, 2021.12.30. 시행)된 바 있음.

[표 1] 사인의 금지청구권 관련 국내 도입 주요현황

법률	조문	주체	행사요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	피해자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영업상의 이익이 있는 자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 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산업기술 보유자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	지리적 표시권자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 등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 려가 있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3조	품종 보호권자 등	
상표법	제107조	상표권자 등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디자인권자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⁷⁾ 중간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금지청구, 징벌배상제 등 민사적 수단을 이용하여 경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위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2017.8)됨. 논의 중간보고(2017.11.)를 거쳐 2018년 2월 최종결과를 보고함.

쟁법 사건의 95%를 처리하고 있고, 일본의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2000, 금지청구권 도입)이나 「EU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침」 제정(2014)과 같이 여러 국가에서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동 보고는 우리의 경우 주로 행정적 수단에 의존하여 민사적 집행수단의 구비나 활용은 미흡한 상황으로, 피해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수단 확대 측면에서 금지청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2021년 8월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을 도입⁸⁾하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수단이 존재하지 않고⁹⁾,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적·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사인의 금지청구권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금지 또는 예방의 청구와 함께 법 위반행위의 조성 및 제공과 관련된 물건·설비의 폐기·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독립적 행사가 아닌 금지 또는 예방 청구에 수반하여 청구

8)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제21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제40조의2), 입증책임 전환(제40조의4)

9) 우리 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나, 개정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금지청구 및 가처분신청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최근 하도급법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의 경우에도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음. - [참고자료] 2. 금지청구권 관련 주요 판례 참조

할 수 있는 부대성격의 청구권으로,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하여 장래의 침해 재발을 막을 수 있으므로¹⁰⁾,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은 금지청구에 대하여는 침해 우려만으로도 제기 가능하여 악의적 남소(濫訴)로 활용될 여지가 있는 점, 특정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유력사업자인 가해자가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시장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¹¹⁾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반면 남소 방지를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청구요건을 설정할 경우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양측의 우려를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의 침해와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과 공정거래법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의미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음. 관련 입법례에서는 청구요건의 과도한 제한이 제도활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별도의 청구요건을 설정하여 제한을 두기보다는 적용대상 행위를 분명히 하고 금지청구의 내용을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정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 윤선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고찰, 한일법학연구 제16권(1997), p116

11) 강지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관련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446호(2018.4), p4

[표 2] 개별법상 금지청구권 내용 비교

구분	개정안	공정거래법	부정경쟁 방지법	산업기술 보호법	특허법
적용행위	기술자료 유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부정경쟁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산업기술 침해 행위	권리 침해 행위
적용대상	피해(우려)	피해(우려)	침해(우려)되는 영업상 이익	침해(우려)되는 영업상 이익	침해(우려)되는 권리
금지청구 내용	그 침해 행위 (피해자에 대한 침해행위로 한정)	그 침해 행위 (좌동)	그 침해 행위 (좌동)	그 침해 행위 (좌동)	그 침해 (좌동)
청구요건	-	-	-	-	-
물건 등의 폐기·제거 청구	가능	-	가능	가능	가능
기 타	-	담보제공명령 포함	청구권리의 소멸시효 규정 (안 날부터 3년, 행위시작일부터 10년)	청구권리의 소멸시효 규정 (안 날부터 3년, 행위시작일부터 10년)	-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수단이 부족하고,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금지청구권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임.

참고로, 사인의 금지청구권과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954호)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¹²⁾.

문 의 처
02) 6788-5467

12) 제21대 국회에서 유사 취지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43호)의 경우 법사위의 과정에서 적용범위가 넓은 수탁·위탁거래에 금지청구 제도를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하도급거래에 먼저 적용 또는 최소한 동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제40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2023.3.27., p40)

※ 당시 유사 취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6544호)은 임기만료폐기됨.

【참고자료】

1

사인의 금지청구권 관련 유사 입법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금지청구 등) ①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51조제1항제4호[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외에 해당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도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한 판례(인정)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이용한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이고,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0. 8. 25. 2008마1541 결정)

개별법상 근거 없음을 이유로 금지청구 또는 가처분청구를 기각한 판례(불인정)

원고 다음커뮤니케이션이 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피고가 윈도우 XP를 판매하면서 인스턴트 메시지를 끼워팔기 한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금지를 구하였음. 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구 공정거래법 제56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03.8.1. 선고 2001가합60373 판결).

신청인 삼성, 신한, 롯데, 외환은행등 4개 은행이 피신청인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피신청인의 교통카드 서비스 중지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거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거래거절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청구를 기각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31. 선고 2005카합4494 결정).

원고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피고 (주)한화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구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 및 기술자료 공개 및 사용금지 등을 구하였음. 법원은 “구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규정은 원사업자에게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구 하도급법에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저작권법 등에서 위 각 법 위반으로 인하여 침해를 입은 자에게 명문의 규정을 두어 침해행위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구 하도급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구 하도급법에 근거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 하도급법에 기한 기술자료 공개 및 사용 금지, 피고 제품 등의 폐기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결함(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0나 2032402 판결).

3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 처리절차(중소벤처기업부)

